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10. 5.(화)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남영숙 의원 외 23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각급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전자변형 식품 등 안전성이 불분명한 식재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다.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공동구매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 자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 학교급식 조리실의 공기 질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바. 학교급식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11조)

4.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 식품위생법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 반영(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조사팀)
- 규제심사: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교육청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결과 ‘원안 동의’ (교육청 감사관)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학생생활과)
- 해당부서의견 : 의견 반영(체육건강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2.9.28. ~ 10.3
- 의견제출: 없음

7.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경상북도 각급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되었음
-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 위생 및 식재료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각 시군지원청에 15명 이내의 학교급식지원단을 설치 및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시군의 학교 수에 따라 학교급식지원단이 점검해야 할 대상 학교 수의 차이가 큰 도시 지역 학교급식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7조는 학교급식점검단에게 지급할 수당을 규정하고 제8조는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의 활성화, 제9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최소화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학교·경상북도·시군·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경북도내 시군별 각급학교 현황(2022.04.01.현재)]

시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시군별 학교수
포항	117	68	35	27	1	1	249
경주	57	44	20	19	1		141
김천	38	30	15	10		1	94
안동	42	34	13	13	2		104
구미	104	52	28	21	1		206
영주	26	19	11	9			65
영천	22	20	12	9	1	2	66
상주	35	31	17	10	1		94
문경	23	20	9	6		1	59
경산	59	32	15	12	1	2	121
군위	8	8	5	2			23
의성	16	17	10	6			49
청송	8	8	9	0			25
영양	7	7	4	3			21
영덕	11	11	8	4			34
청도	14	11	6	5			36
고령	9	9	6	2			26
성주	15	14	8	3			40
칠곡	32	22	11	7			72
예천	15	12	9	3			39
봉화	16	16	7	3			42
울진	16	17	8	5			46
울릉	6	5	1	1			13
급 별 학교수	696	507	267	180	8	7	1,665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단 설치·운영하고 유전자변형식품 자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학교급식 안정성을 둘러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